

2018 문화정보화협의회 및 문화IT포럼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의견제안서

협회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업계를 압박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를 염려하여 불공정 현황 개선을 통한 상생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미래 핵심 산업인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질적인 성장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4일, (사)한국PCO협회

페이지	공개 규격	건의 사유
10	※ 매 행사 종료 후 운영결과 예산·회계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사업비 정산 보고서(세부산출내역서),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제출)	○ 공공계약 시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대한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비 전체에 대한 실비정산(사후원가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은행입출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함은 부당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상 사전에 금액을 정할 수 없거나 변동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기준 및 절차를 협의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총액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삭제 또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기획재정부 공문 참조(2-3페이지)
12	※ 매 행사 종료 후 운영결과 예산·회계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사업비 정산 보고서(세부산출내역서),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제출)	
19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제안사의 인력이 한국문화정보원에 상주하여 용역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u>MICE 용역 참여자는 법적인 근로자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 삭제 바랍니다.</u> ※ 파견인력이 필요한 특수 상황은 발주처와 대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파견이 필요할 경우 해당 용역의 산출내역서 상 파견기간에 대한 파견인력 인건비를 반영해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21조 참조

인쇄 : 성세훈 / 서비스계약과 (2016-07-25 10:47:23)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조 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계약제도(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계약제도과-143호(2016.1.26.)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계약 시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임과 같이 유의·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관련문서(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 통보) 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자 자재장비과장, 쇼핑물기획과장, 쇼핑물단가계약과장, 쇼핑물구매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정보기술계약과장, 우수제품구매과장, 서비스계약과장, 건설용역과장, 시설총괄과장,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시설사업기획과장, 예산사업관리과장, 공사관리과장, 서울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서울지방조달청장(정보기술용역과장), 서울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서울지방조달청장(시설팀장), 서울지방조달청장(공사관리팀장), 인천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인천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부산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부산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과장), 대구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대구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과장), 광주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광주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대전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대전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강원지방조달청장(물자구매과장), 충북지방조달청장(물자구매과장), 전북지방조달청장(물자구매과장), 경남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경남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제주지방조달청장(물자구매팀장), 감사담당관

주무관	장익환	사무관	조용만	구매총괄과장	전결 2016. 2. 1. 강신면
협조자					
시행	구매총괄과-283	(2016. 2. 1.)	접수	서비스계약과-610	(2016. 2. 1.)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pps.go.kr		
전화번호	070-4056-7464	팩스번호	0505-480-1791	/ jnu05@korea.kr	/ 대국민 공개

호국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문서관리카드 서비스계약과-610 1/1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 통보

1. 공공계약시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사례(행사대행 계약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하오니 국가계약제도 운영시 이를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소속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 등에도 아래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 이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 따라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①해당 계약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대상 여부, ②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③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끝 .